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21. 1. 31. / (총 00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장 담당자	양정석 박영운	전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장 담당자	김성훈 유향섭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장 담당자	백형기 박은경		044-202-1720 044-202-172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담당자	이기중 김준걸		044-201-2551 044-201-2552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장 담당자	송은철 유효연		02-2113-7660 02-2133-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장 담당자	임순택 최문갑		031-8008-5420 031-8008-5422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총리말씀 보완예정



- 1 -



평생친구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최근 1주간(1.24~1.30)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1.4%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 또한,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러나, 3차 유행의 반전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11월 3주(11.14~11.15)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2주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 이동량 추이(천건) : 45,109(1.9~1.10) → 52,613(1.16~1.17) → 56,686(1.23~1.24)
-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소상공인은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하였다.



- 3 -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난 주(1.18~1.24)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60여 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 그러나,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하여 최근 1주간(1.25~1.31)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4~1.10	1.11~1.17	1.18~1.24	1.25~1.31
수도권	2.5	514.6	333.6	250.4	240.3
비수도권	-	222.0	165.0	114.9	177.7
충청권	2	49.7	22.6	19.6	37.0
호남권	2	39.9	28.0	18.7	49.4
경북권	2	47.3	29.1	23.0	31.6
경남권	2	59.0	71.1	40.9	47.0
강원권	2	19.6	12.4	9.9	12.1
제주권	2	6.6	1.7	2.9	0.6
소계		736.6	498.6	365.3	418.0

-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 2 -



평생친구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 4 -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체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3>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재 21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 아울러, 유흥주점, 클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 5 -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유흥주점, 클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 다만 틸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2.5단계	2단계
집합금지 시설	▲ 유흥시설 6종 (유호·단란·감성주점 클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유흥시설 6종 (유호·단란·감성주점 클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해제)
21시 이후 운영중단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 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카페(취식금지)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 50명 미만	▲ 100명 미만
종교활동	▲ 10% 이내 대면 예배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영화관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향후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6 -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 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 <4>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과 평가 및 개선관련 토론회 실시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화) (09:30~12:00) LW컨벤션(서울시 종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협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 향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 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실시(2월2주)한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포함 현장 참석은 초청 기자단으로 제한하고, 대신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 * (보건복지부) youtube.com/mohwpr, (KTV 국민방송) youtube.com/chKTV52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주부터 관계 부처 및 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거리 두기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따라주시기를 부탁하였다.



- 7 -



- 8 -



2 |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24~1.3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24.3명으로 그 전 주간(1.17~1.23.)의 384.0명에 비해 40.3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2.6명으로 그 전 주간(1.17~1.23.)의 109.9명에 비해 2.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3.~1.9.	1.10.~1.16.	1.17.~1.23.	1.24.~1.30.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38.0명	516.1명	384.0명	424.3명
60세 이상	214.9명	149.4명	109.9명	112.6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35.3명	29.9명	26.9명	27.3명
집단 발생 ^(신규 기준)	48건	46건	35건	1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2.6%	21.5%	22.5%	21.4% (678/3,161)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41.6%	44.8%	44.2%	37.0%
즉시 가용 중환자실	191개	205개	261개	410개 (1.19.9시기준)
	(1.16.9시기준)	(1.23.9시기준)	(1.23.9시기준)	(1.30.9시기준)

-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는 243.6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는 180.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 (1.23.) 297명 → (1.25.) 275명 → (1.27.) 270명 → (1.29.) 239명 → (1.31.) 229명



- 9 -



- 10 -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9,437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9%로 7,18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8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2.3%로 6,0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8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2%로 5,9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8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0%로 2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3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76병상, 수도권 25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30. 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9,437	7,183	8,708	5,907	425	204	763	476
수도권	7,819	6,077	3,634	2,288	280	121	464	259
서울	4,728	4,009	1,742	1,130	83	41	215	117
경기	1,852	1,291	1,300	661	164	58	198	111
인천	536	382	592	497	33	22	51	31
강원	164	149	362	257	5	2	25	19
충청권	241	143	1,091	767	46	19	65	48
호남권	225	51	953	665	10	7	51	35
경북권	510	455	1,403	1,039	28	20	51	37
경남권	478	308	941	584	51	30	99	70
제주	-	-	324	307	5	5	8	8



- 11 -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5.~1.3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40.3명	37.0명	49.4명	31.6명	47.0명	12.1명
60대 이상	69.6명	3.6명	7.9명	8.6명	21.4명	1.9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30. 9시기준)	259개	48개	35개	37개	70개	19개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5→11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의약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31.) 총 162만5021건을 검사하였다.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826건을 검사하여 3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25개소(부산 6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4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중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 * 진주 국제기호원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명 양성 확인(1.21)
 -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 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12 -



- 11 -



-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여전에 따라 위탁보호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다중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환경검체 검사(1.28~2.24)를 추진한다.
 - 콜센터, 요양시설, 합마식당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검체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1.28(목) 요양시설 2개소 검사, 바이러스 미검출 확인
 - 검사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내 공용물품 등 위주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바이러스 검출 시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맞춤형 검사령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검체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2차 검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13 -



-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 계획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일상 속 유형별 습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15 -



- 14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 계획

□ 추진 배경

- '20.11월 개편 추진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개선점을 도출하여 설 연휴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필요
- 학계 등 전문가, 방역 대상시설 관계자 등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토론 개요

- (일시) '21.2.2(화) 09:30~12:00
- (장소) LW컨벤션 (서울 중구 청파로464 브라운스톤서울 3층)
- (주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논의
 - 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평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② 개선방향 * 2차 토론 ① 단계별 기준 조정 ② 구체적 방역수칙 개선방안 (2월 2주 예정)
- (발제) 김윤 교수, 권순만 교수
- (참석) 발제자, 토론자(분야별 전문가 등) 5인, 중수본 관계자

[참석자 명단(안)]

회차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발제자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감염 전문가)
		권순만	서울대 교수(보건경제학 전문가)
1회차	토론자	조홍식	보건사회 연구원장
		최원석	고려대 교수(감염내과)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방역 전문가)
		구인희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전문가)
		박주영	송실대 교수(경영학 전문가)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 전문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16 -



○ (진행) 1부(인사말·안건설명)·2부(종합토론) 진행

순서		시간	내용
1부 안건설명	인사말씀	09:30~09:35 ('5)	중수본(보건복지부 제2차관)
	총평	09:35~09:50 ('15)	권순만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입성조사 결과발표	09:50~10:05 ('15)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10:05~10:15 ('10)	중수본(생활방역팀장)
휴식		10:15~10:25	
2부 개별토론		10:25~11:25 ('60)	* 좌장: 조홍식(보건사회연구원장) (의료) 최원석 교수(고려대 갑염내과) (방역)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종합토론	11:25~11:55 ('30)	(사회복지) 구인희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부) (경제) 박주영 교수(숭실대 벤처증券기업학과)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부)
	마무리	11:55~12:00 ('5)	(중수본) 손영래(사회전략반장)

○ (홍보·증계) 복지부 기자단 초청*, 유튜브 생중계(KTV)

* 실내 참석자 50인 이내로 제한,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불임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21.2.14)

※ 적서 불드체(밀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①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신 가능성이 있어 가능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사업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공통수칙	②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형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매출보관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인원 제한, 품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품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m ² 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노래연습장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인원 제한, 품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품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m ² 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1시~의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 ² 이상) ▶ 부페의 경우, 공동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파티룸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계시(개별 방 면적대비 8m ² 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계시 및 안내 ▶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 ² 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개별스포츠시설 포함)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격렬한 친밀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즐비·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 스크린골프장 등 를 형태는 품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사위실 운영 시 이용객은 한 칸 띄우기, 텔의실 내 마스크 착용 ▶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장·방등장·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서틀버스 운행 중단 ▶ 장의품·물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촉진 또는 자체 권고 ▶ 직원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일일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텔의실·온라인 등으로 시설은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계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 , 칸막이 설치 시 하나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신체적 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계시 및 안내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테이블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밤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접객객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m ²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 칸막이 설치 시 하나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 개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개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펫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사회복지이용시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체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관중 경기
등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p>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안 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21 -



- 22 -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계시(개별 방 면적대비 8m²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계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선 고면적 50m 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กลาง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체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속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계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3 -



- 24 -



* 적서 불드제(일종)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p>① 모임·행사</p> <p>▶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p>-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p>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p>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p>
공통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시~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p>▶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p> <p>▶ 식당·카페 모두 21시~의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 부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p>▶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p> <p>▶ 시설·시설·건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p> <p>▶ 접객행사 금지</p> <p>▶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p>
마트·상점 (300m ²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조사 및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 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 25 -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등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25 -



- 26 -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성이 있어 가족, 치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③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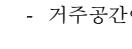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 당 1명, 비수도권 4㎡ 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등



- 27 -



- 28 -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5.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6.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7.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29 -



Q12.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3.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직장 관련

Q14.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31 -



2 가족 모임 관련

Q8.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1.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30 -



Q15.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 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6.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7.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8.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32 -



Q19.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0.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1.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2.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33 -



Q27.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8.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9.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35 -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 까지만 가능

Q24.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는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5.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6.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 34 -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식당·카페(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의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m²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36 -



Q3.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 한가요?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37 -



- 38 -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자체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m²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는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39 -



- 40 -

**2 스키장 (전국)****Q1.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 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Q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스키장 내 부대시설 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m²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에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21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함
- 단,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됨

4 노래연습장 (수도권)**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m²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

시설면적(평/m ²)	30평	50평	70평	비고 룸당 최대수용인원 4명
	99.17 m ²	165.28 m ²	231.39 m ²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8m ²	13명	21명	29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m²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투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투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품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 손님이 이용한 품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품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5 실내체육시설 (수도권)**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m²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 '운동공간'뿐 아니라 사위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41 -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 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리테스장 등)>

시설면적(평/m ²)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m ²	99.17m ²	165.28m ²	330.57m ²	661.15m ²	991.73m ²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 8m ²	9명	12명	21명	42명	83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시설면적(평/m ²)	48평	52평	78평	비고
158.67m ²	171.90m ²	257.85m ²		
설치 당구대 수(대)	7대	8대	11대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 8m ²	20명	22명	33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품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투당 4명 까지만 이용 가능



- 41 -



- 42 -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띠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Q4.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줄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6 학원 (수도권)**Q1.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m²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띠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 43 -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 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리테스장 등)>

시설면적(평/m ²)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m ²	99.17m ²	165.28m ²	330.57m ²	661.15m ²	991.73m ²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 8m ²	9명	12명	21명	42명	83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시설면적(평/m ²)	48평	52평	78평	비고
158.67m ²	171.90m ²	257.85m ²		
설치 당구대 수(대)	7대	8대	11대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 8m ²	20명	22명	33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품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투당 4명 까지만 이용 가능



- 42 -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판악기 교습은 비밀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Q3.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Q4.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



- 43 -



- 44 -



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숙박시설 운영 금지

① 일소자(공동)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등에 진행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입소후) 2주간 예방관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충간 이동 자체, 공용 공간(사무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 ② 종사자(공동) 일소자와 동선 분리, 저기준단계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7 실내 스텐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텐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텐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45 -



평생친구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개시 및 안내

-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허용
-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8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애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 46 -



평생친구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 47 -



- 48 -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됨

-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49 -



출판은인정 플랜타

불임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주체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 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축,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초기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와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50 -



출판은인정 플랜타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심이 연구기관, 의료계, 학계 회사의 정의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은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폐쇄, 대혼란, 대란, 공포, 칭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파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 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행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51 -



출판은인정 플랜타

<참고>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약정: 감염병 예방법)

-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개념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 진료비·입기관 및 접촉자·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개인 또는 보도자료·별표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3항에 따라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판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로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판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정: 감염병 예방법)

-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절차)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예방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참고>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증상, 전단, 치료, 환자판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판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 이 조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여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52 -



출판은인정 플랜타